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185호

나. 발 의 자 : 김기덕 의원(찬성자 14명)

다. 발의일자 : 2024년 10월 16일

라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대한민국의 국기(國技)인 태권도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,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.
- 이에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고, 태권도 선수 및 팀의 충분한 훈련 공간 확충을 위해 서울시 시립체육시설 사용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장이 태권도 선수 및 팀의 훈련을 위해 시립체육시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9조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국기인 태권도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추세에서,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 선수 및 팀의 충분한 훈련 공간을 지원하고자 서울시 시립체육시설 사용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나. 법적근거

-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는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법 제8조(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)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우수 태권도 선수와 팀에 대한 시립체육시설의 사용 지원 관련 사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5호 상 자치사무의 하나인 ‘체육의 진흥’과 관련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됨.
- 따라서 국기 태권도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로 시립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 입법체계상 문제가 없

을 것으로 판단됨.

<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>

제8조(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**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**

다. 시립체육시설 사용 지원(안 제9조)

- 안 제9조는 시립체육시설의 사용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안 제6조(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)에 따라 지원을 받은 선수·팀과 안 제8조(표창)을 근거로 표창을 받은 우수 선수·팀, 서울특별시 내 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 팀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규정함.

<「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」>

제6조(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)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·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표창)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- 2021년 9월 동 조례안이 시행된 이래 학교 태권도 교육 진흥이나 표창을 근거로 지원대상이 되는 선수·팀과 서울특별시 내 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팀은 극히 한정적인 바, 시립체

육시설의 사용 지원대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- 또한 시립체육시설 사용 지원은 행정적 지원, 사용료·이용료의 면제·감면 지원 등으로 나뉠 수 있으나, 그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선언적·상징적 의미에 불과한 바, 시설 사용료 면제·감면 지원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임.

<조례 시행이후 적용 사례>

구분	적용 사례
1. 제6조에 따라 시장의 지원 을 받은 선수·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국소년체전 서울시 대표팀 - 초등부 1팀(남/여) 15명, 중등부 1팀(남/여) 19명 • 전국체전 서울시 대표팀 - 고등부 1팀(남/여) 18명
2. 제8조에 의해 표창 을 받은 우수 선수·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시 체육인의 밤 체육유공자 표창 (’24년 -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 1명)
3. 서울특별시 내 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국소년체전 서울시 대표팀 - 초등부 1팀(남/여) 15명, 중등부 1팀(남/여) 19명 • 전국체전 서울시 대표팀 - 고등부 1팀(남/여) 18명, 대학부 1팀(남/여) 18명, 일반부 1팀(남/여) 12명 • 전국생활대축전 서울시 대표팀 - 일반부 1팀 (남/여) 21명

- 따라서 조례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원대상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방법이 추상적인 바, 향후 구체적으로 지원 세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됨.

의안번호
2185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	
	김기덕 의원 (문화체육관광위원회)	2024. 10. 16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	
주요내용	<p><제안이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한민국의 국기(國技)인 태권도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,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○ 이에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고, 태권도 선수 및 팀의 충분한 훈련 공간 확충을 위해 서울시 시립체육시설 사용 지원 근거 조항 마련 <p><주요 입법 요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태권도 선수 및 팀의 훈련을 위해 시립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(안 제9조) 				
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4. 10. 16. 조례안 발의(발의자 : 김기덕 의원) - (찬성자) 김형재, 남창진, 문성호, 이용균, 홍국표 의원 등 14명 				
부 검토 의 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태권도법」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제8조(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)는 지자체가 태권도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,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○ 태권도 선수 및 팀의 훈련을 위한 시립체육시설 사용 지원은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 				
대응방안	○ 해당없음				
담당부서	체육정책과	팀장	남규하(☎2133-2677)	담당	방준흠(☎2133-2678)